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단체관광객 이탈사고 관련 전담여행사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
■ 박수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28호)

2026.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용 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단체관광객 이탈사고 관련 전담여행사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	2
※ 참고자료	9
1. 2025년 월별 방한 중국 관광객 입국 현황	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박수현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2025. 12. 23.

다. 회 부 일: 2025. 12.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에 위하여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을 갖춘 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하고, 유효기간을 두고 지정을 갱신하고 있음.

또한 고의나 공모에 의한 이탈사고, 전담여행사가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여행업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이 과다한 경우에는 현행법 상 명시적인 행정제재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단이탈의 정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행정제재를 차등을 두어 명할 수 있도록 제제수단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단체관광객의 무단 이탈자의 수, 이탈율, 이탈 사유, 이탈 시간 및 횟수 등에 따라 전담여행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제수단을 신설하고,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여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려고 함(안 제12조의3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단체관광객 이탈사고 관련 전담여행사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관광객이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탈자의 수, 이탈률 등을 고려하여 전담여행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여행사의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3항·제4항 및 제80조제3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전담여행사 지정 등) ①·② (생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12조의3(전담여행사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 3. (현행과 같음) <u>4.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u>

현행	개정안
4. (생략) <u><신설></u> ④ (생략)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 ② (생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 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 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전문 연구·검사기관, 자격 검정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위탁	<u>에 전담여행사의 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u>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관광객이 여 행 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무단 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단 이탈자의 수, 이탈 율, 이탈 사유, 이탈 시간 및 사고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을 정하여 전담여행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현행	개정안
할 수 있다. 1. (생략) <u><신설></u> <u>1의2.</u> (생략) 2. ~ 9. (생략) ④ ~ ⑥ (생략)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지정·갱신 심사</u> <u>1의3.</u>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2. ~ 9.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현행법은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관광 관련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에 위하여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 등의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현재 전국에 178개의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전담여행사가 운영되고 있음¹⁾.

「관광진흥법」

제12조의3(전담여행사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과 관련한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이하 "전담여행사"라 한다)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 지정의 유효기간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전담여행사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

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여행업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담여행사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그 밖에 전담여행사의 지정·갱신·지정취소 및 전담여행사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전담여행사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여행업자를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이하 "전담여행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별로 전담여행사를 지정할 수 있다.

1. 여행업자 중 영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종합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단체관광객의 유치에 적합한 수준의 재정 건전성을 갖춘 자일 것
3. 단체관광객의 유치에 적합한 수준의 여행상품 기획·집행능력을 갖춘 자일 것
4.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났을 것

② ~ ⑧

이와 관련하여 전담여행사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전담여행사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전담여행사가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거나 고의·공모로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킨 경우, 여행업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1) 2026. 2. 4. 기준

그런데 지난 2025년 9월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후 중국인 관광객의 무단이탈이 발생하고 있어²⁾ 불법 체류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전담여행사가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서만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제12조의3제3항제3호)하고 있음.

따라서, 고의나 공모가 없었더라도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제재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방한 중국 단체관광객 이탈률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3	2024	2025 (11월 기준)
단체비자 입국객 수	2,083,832	288,350	194,154	711,617	68,477	415,810	568,719 (44.3%)
이탈자 수	1,459	492	480	1,458	412	1,899	1,059
이탈률	0.07	0.17	0.25	0.20	0.60	0.46	0.18

* 단체비자 입국객 수: 단체 전자비자 발급 인원 수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개정안은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관광객이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 무단 이탈자의 수, 이탈률, 이탈 사유, 이탈 시간 및 사고 횟수 등에 따라 해당 여행사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업무 정

2) “한 명도 못 잡았다”...비자 없이 입국한 中 관광객 6명 잠적, 동아일보, 2025.10.16.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1016/132574002/2>)
 ‘무비자 입국’ 후 사라진 중국인 2명...검거되자 한 말, SBS 뉴스, 2026.1.1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402372&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지 기간 중 전담여행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제재수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전담여행사의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담여행사 지정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① 단체관광객의 관광 환경이나 여행사의 관리 체계에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단체관광객의 이탈사고와 해당 여행사의 관리 책임 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② 전담여행사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행정제재 기준의 융통성 있는 수립이 필요하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법이 고의나 공모에 의한 이탈사고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를 재량으로 하고 있어 이탈 정도와 위반 횟수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재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단체관광객의 이탈자 수, 이탈률 등에 따라 전담여행사 업무정지를 명하는 제재수단을 신설할 경우 여행업계의 공정질서 수립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임.

이에 반해, 법무부는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 정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적절한 행정제재를 차등을 두어 제재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적극 수용하나, 행정제재 세부 기준은 산업

현장의 현황 및 특수성, 행정제재 실효성을 반영하여 정책 또는 상황 변화에 적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한편, 한국여행업협회는 무단이탈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치안 부담 가중의 예방을 위해 이탈사고 발생 시 전담여행사에 대한 행정제재의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법률에 일률적 처분기준을 정하기보다는 문화체육부장관이 관광객의 무단이탈 발생 현황을 고려하여 행정제재의 기준 및 정도를 수립·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7

※ 참고자료

1. 2025년 월별 방한 중국 관광객 입국 현황

구분	단체 관광객(a)				개인 관광객 (b)	합계 (a+b)
	단체 비자	크루즈	소계			
			인원	비중 (a/a+b)		
1월	23,936	47,005	70,941	19.4%	293,519	364,460
2월	17,211	50,503	67,714	19.8%	273,146	340,860
3월	43,188	63,515	106,703	25.5%	310,146	416,849
4월	50,392	61,962	112,354	25.3%	330,876	443,230
5월	48,720	88,466	137,186	28.3%	347,204	484,390
6월	55,723	84,161	139,884	29.3%	337,168	477,052
7월	88,459	87,142	175,601	29.1%	426,546	602,147
8월	76,106	86,047	162,153	26.8%	442,465	604,618
9월	61,891	74,824	136,828	27.1%	366,358	503,186
10월	58,603	62,779	121,471	25.7%	351,006	472,477
11월	44,490	55,369	99,859	26.4%	278,007	377,866
12월	(집 계 중)					
합계	568,719	761,773	1,330,694	26.1%	3,756,441	5,087,135

* 전체 중국관광객 중 단체비자를 받은 관광객은 11.1%

** 크루즈: 중국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중국인 단체관광객으로 관광상륙 허가 대상 승객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